

거 래 사 실 확 인 신 청 서 (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)

1. 신청인 인적사항

① 상 호 (법 인 명)		② 사업자등록번호	
③ 성명(대표자명)		④ 전 화 번 호	
⑤ 사업장소재지			
사업의 종류	⑥ 업 태		⑦ 종 목

2. 공급자 인적사항

⑧ 상 호 (법 인 명)		⑨ 사업자등록번호	
⑩ 성명(대표자명)		⑪ 전 화 번 호	
⑫ 사업장소재지			

3. 신청 내용

⑬ 공급대가		⑭ 공급가액		⑮ 부가가치세	
--------	--	--------	--	---------	--

4. 거래내용 명세서

NO	⑯ 거래일	⑰ 거래품목	⑱ 규격	⑲ 수량	⑳ 공급대가 (부가가치세포함)	㉑ 비고 (대금결제방법)
	합계					

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21조의4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※구비서류

1.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명자료(필수)
2. 그 밖의 거래사실 증명자료

작성 방법

1. 이 신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4제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**3개월 이내**에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.
 2. 공급자 인적사항(⑧~⑫)
 - 가.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 - 나. ⑧, ⑪, ⑫란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 - 다.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라. 거래 당시 미등록자, 휴업자·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3. 신청 내용(⑬~⑮)
 - 가. 공급대가(⑬)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적으며, 대상금액은 신청건당 공급대가가 **10만원 이상인 거래분입니다**
 - * 거래내용 명세서상 공급대가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.
 - 나. 공급가액(⑭)은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다. 부가가치세액(⑮)은 공급가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 - * 부가가치세액(⑮) = **공급가액(⑭)**
(공급대가 ÷ 1.1) × 10 %
 4. 거래내역명세서(⑯~㉑)
 - 가. 위 거래내용에 대한 세부명세를 적습니다.
 - 나. 공급대가(㉑)의 합계는 신청내용의 공급대가(⑬)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
- 다. 비고(㉒)란에는 대금결제방법을 적습니다.
4. 구비서류
 - 가.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(간이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등)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(대금결제)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나. 그 밖에 거래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.

[별지 제76호서식 부표] 삭제 <2010.4.20>